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 ※ 2024.05.02.일자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2024.05.03.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1. 추가선택 옵션 중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의 품목명 변경으로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48p 추가 선택품목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수정전)

| 주택형(약식)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계약시 | 잔금(90%) 입주지정일 |
|---------|--------------------------------------------------------------------------------------------------|-----------|------------------|------------------|
| 59C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거실우물천장간접조명 -복도, 주방 고급 매입등 -거실/ 침실1,2/ 안방 커튼박스 간접조명 -거실/ 침실1,2/ 안방 고급직부등,주방 고급식탁등 | 4,000,000 | 400,000 | 3,600,000 |

■ 입주자 모집공고문 48p 추가 선택품목 -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수정후)

| 주택형(약식)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90%) |
|----------|----------------------------------------------------------------------------------------------------|-----------|-----------|-----------|
| 1 10(11)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9C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복도, 주방 고급 매입등 -거실/침실/다목적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거실/안방/침실/다목적실 고급 직부등, 주방 고급 식탁등 | 4,000,000 | 400,000 | 3,600,000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2024.05.02.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1.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문구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7p 공급대상 관련 문구(수정전)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 입주자 모집공고문 7p 공급대상 관련 문구(수정후)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 2. 추가선택 옵션 중 가전옵션 품목의 품명 및 선택 주택형의 변경으로 가전옵션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46p 추가 선택품목 가전옵션(수정전)

| | | | 공급 금액 | | | |
|-----------|---------------|-----------|---------------|-----------|-----------------------|------|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시 (10%) | 잔금 (90%) | 주택형(약식) | 제조사 |
| | | | 게득시 (10%) | 입주지정일 | | |
| 4도어 냉장고 | RF60B91R2AP | 4,000,000 | 400,000 | 3,600,000 | 20 40 EOA EOR EOC | 삼성전자 |
| 4포의 경영보 | M622GBB352 | 4,600,000 | 460,000 | 4,140,000 | 39, 49, 59A, 59B, 59C | LG전자 |
| | RF60B91R2AP + | 6 900 000 | 690,000 | 6 120 000 | | 삼성전자 |
| 4도어 냉장고 + | RQ33A74E1AP | 6,800,000 | 680,000 | 6,120,000 | EOA EOR EOC | 급경건시 |
| 3도어 김치냉장고 | M622GBB352 + | 7 500 000 | 750,000 | 6.750.000 | 59A, 59B, 59C | LG전자 |
| | Z332GBB151 | 7,500,000 | 750,000 | 6,750,000 | | LG선사 |

■ 입주자 모집공고문 46p 추가 선택품목 - 가전옵션(수정후)

| | | | 공급 | 금액 | | |
|-------------|---------------|--------------|------------|-----------|---------------|------|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게이티 (100/) | 잔금 (90%) | 주택형(약식) | 제조사 |
| | | | 계약시 (10%) | 입주지정일 | | |
| 4도어 냉장고 | RF60B91R2AP | 4,000,000 | 400,000 | 3,600,000 | | 삼성전자 |
| 4포의 88포 | M622GBB352 | 4,600,000 | 460,000 | 4,140,000 | 39, 49 | LG전자 |
| 4도어 냉장고 + | RF60B91R2AP + | C 000 000 | C00 000 | C 120 000 | | 삼성전자 |
| 3도어 김치냉장고 + | RQ33A74E1AP | AP 6,800,000 | 680,000 | 6,120,000 | FOA FOR FOC | 검정선사 |
| | M622GBB352 + | 7 500 000 | 750,000 | 6.750.000 | 59A, 59B, 59C | LG전자 |
| 수납 특화형 | Z332GBB151 | 7,500,000 | 750,000 | 6,750,000 | | LG건지 |

- 3. 추가선택 옵션 중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의 품목명 및 '공급금액 변경으로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46p 추가 선택품목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수정전)

| 주택형(약식)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계약시 | 잔금(90%) 입주지정일 |
|---------|------------------------------------------------------------------|-----------|------------------|------------------|
| 39 | [욕실1 스타일업] -유럽산 욕실벽 타일(600*600) -ENG젠다이 하부벽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세면대 | 1,000,000 | 100,000 | 900,000 |
| | [주방스타일업] -주방벽 / 상판ENG | 3,400,000 | 340,000 | 3,060,000 |
| 49 | [욕실2 스타일업] -유럽산 욕실벽타일(600*600) -ENG젠다이 하부벽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1,300,000 | 130,000 | 1,170,000 |
| | 강마루 | 500,000 | 50,000 | 450,000 |
| 59A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복도, 주방 고급매입등 | 4,000,000 | 400,000 | 3,600,000 |

| | -거실/침실1, 다목적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 -거실/침실 고급직부등, 주방고급식탁등 | | | |
| | 강마루 | 700,000 | 70,000 | 630,000 |
|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 | | |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 | |
| 59B | -복도, 주방 고급매입등 | 4,000,000 | 400,000 | 3,600,000 |
| 390 | -거실/침실1,2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거실/침실 고급직부등, 주방고급식탁등 | | | |
| | 강마루 | 700,000 | 70,000 | 630,000 |
|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 | | |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 | |
| FOC | -복도, 주방 고급매입등 | 4,000,000 | 400,000 | 3,600,000 |
| 59C | -거실/침실1, 다목적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거실/침실 고급직부등, 주방고급식탁등 | | | |
| | 강마루 | 600,000 | 60,000 | 540,000 |

■ 입주자 모집공고문 46p 추가 선택품목 –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수정후)

| 주택형(약식)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계약시 | 잔금(90%) 입주지정일 |
|---------|----------------------------------------------------------------------------------------------------|-----------|------------------|------------------|
| 39 | [욕실 스타일업] - 유럽산 욕실벽 타일(600*600) - ENG젠다이 하부벽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2,300,000 | 230,000 | 2,070,000 |
| | [주방스타일업] - 주방벽 / 상판ENG | 3,200,000 | 320,000 | 2,880,000 |
| 49 | [욕실 스타일업] - 유럽산 욕실벽타일(600*600) - ENG젠다이 하부벽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2,300,000 | 230,000 | 2,070,000 |
| | 강마루 (텍스쳐 와이드, 165*1,205*7.5T)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 500,000 | 50,000 | 450,000 |
| 59A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복도, 주방 고급매입등 - 거실/침실/다목적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 거실/침실/안방/다목적실 고급직부등, 주방고급 식탁등 | 4,000,000 | 400,000 | 3,600,000 |
| | 강마루 (텍스쳐 와이드, 165*1,205*7.5T) | 700,000 | 70,000 | 630,000 |
| 59B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4,000,000 | 400,000 | 3,600,000 |

| | -복도, 주방 고급 매입등 | | | |
|-----|--------------------------------|-----------|---------|-----------|
| | -거실/침실1, 2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거실/침실1, 2/ 안방 고급직부등, 주방 고급식탁등 | | | |
| | 강마루 (텍스쳐 와이드, 165*1,205*7.5T) | 700,000 | 70,000 | 630,000 |
|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 | | |
| | -거실우물천장간접조명 | | | |
| 59C | -복도, 주방 고급 매입등 | 4,000,000 | 400,000 | 3,600,000 |
| J3C | -거실/ 침실1,2/ 안방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거실/ 침실1,2/ 안방 고급직부등,주방 고급식탁등 | | | |
| | 강마루 (텍스쳐 와이드, 165*1,205*7.5T) | 600,000 | 60,000 | 540,000 |

- 4. 설계 및 단지 관련 주요 고지사항 중 단지 공통사항의 문구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58p 설계 및 단지 관련 주요 고지사항 단지 공통사항(수정전)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58p 설계 및 단지 관련 주요 고지사항 단지 공통사항(수정후)
- 각 동 필로티 내부 혹은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 휴게공간 등 조경시설(놀이, 운동 등)이 일부 동에 계획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간 협의 등에 따라 위치, 기능, 시설 등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해당지 역 | | 기타지역 | | 규제지역여부 | | |
|-------------------------------------------------|----------|---------------------------------------------|--------|--------|-------|------|
| 민영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04.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 | 광명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현 | <u>i</u>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성 | 낭한제 | 택지유형 |
| 없음 | | 1년 | 없음 | 미적 | 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4.04.25.(목) | 24.05.07.(화) | 24.05.08.(수) | 24.05.09.(목) | 24.05.16.(목) | 24.05.17.(금)~ 24.05.22.(수) | 24.05.27.(월)~ 24.05.29.(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내 분양 상담전화(☎1551-345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2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u>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u>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건은 39, 49형의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59A, 59B, 59C타입의 경우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계약금 10% 완납시 대출 실행가능)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ଅଟମ୍ୟ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12개월 | l 이상, 지역별·면적별 0 | 계치금 충족)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10/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0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X | (| | |

※ 다.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유의사항

2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25.(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2.04.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4.05.07.(호) | 24.05.08.(수) | 24.05.09.(목) | 24.05.16.(목) | 24.05.17.(금)~ 24.05.22.(수) | 24.05.27.(월)~ 24.05.29.(수)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 (현장접수) 청약통장 7 | · | ■ (PC·모바일) 청약홈 | ■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주소: 경기도 안양시 석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1년 | 1년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균형개발과 - 4816 호(2024, 04 , 24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5-3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15개동 총 1.509세대[조합 886세대, 임대 76세대, 보류지 14세대] 중 일반분양 533세대

[특별공급 263세대(기관추천 53세대, 다자녀가구 26세대, 신혼부부 95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7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 ~~~~~~~~~~~~~~~~~~~~~~~~~~~~~~~~~~~~~ | | | | 쥐 | 택공급면적(෦ | n²) | 기타 | 계약 | 세대별 | 太 フユ | | | 특별공급 | 세대수 | | | 일반공급 | 최하층 |
|---------------------------------------|---------------------------|-----------------|----------|---------|---------|---------|----------|----------|---------|-------------|----|-----|------|--------------|----|-----|------|------|
| | 모델 | 주택형 (편요면전기조) | 약식표기 | 주거 | 주거 | 소계 | 공용면적 | 세약 면적 | | 총공급 | 기관 | 다자녀 | 신혼 | 노부모 | 생애 | 계 | | 우선배정 |
| 관리번호 | | (전용면적기준)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포게 | (지하주차장등) | · 면색 | 대지지분 | 세대수 | 추천 | 가구 | 부부 | 부양 | 최초 | 771 | 세대수 | 세대수 |
| | 01 | 039.9878 | 39 | 39.9878 | 23.1236 | 63.1114 | 32.9634 | 96.0748 | 23.9085 | 90 | 3 | 0 | 12 | 0 | 9 | 24 | 66 | 0 |
| | 02 | 049.9994 | 49 | 49.9994 | 28.6784 | 78.6778 | 44.1856 | 122.8634 | 29.8055 | 138 | 9 | 0 | 17 | 0 | 14 | 40 | 98 | 6 |
| | 03 | 059.9984A | 59A | 59.9984 | 24.8841 | 84.8825 | 53.5502 | 138.4327 | 32.1560 | 197 | 26 | 18 | 42 | 11 | 37 | 134 | 63 | 32 |
| 2024-000164 | 04 | 059.9978B | 59B 59B1 | 59.9978 | 25.3450 | 85.3428 | 53.5496 | 138.8924 | 32.3304 | E.C. | 6 | | 10 | 2 | 7 | 20 | 27 | 6 |
| | 04 | 059.99766 | 59B2 | 59.9978 | 25.3450 | 85.3428 | 53.5496 | 138.8924 | 32.3304 | 56 | 0 | 4 | 10 | 2 | / | 29 | 21 | 0 |
| | 05 | 059.9985C | 59C | 59.9985 | 25.0069 | 85.0054 | 53.5503 | 138.5557 | 32.2026 | 52 | 9 | 4 | 14 | 2 | 7 | 36 | 16 | 5 |
| | 합계 533 53 26 95 15 74 263 | | | | | | | | 263 | 270 | 49 | | | | | | | |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벽체,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벽체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소수점 4째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1m²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타입 중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한 59B1, 59B2 타입은 주택형 059.9978B형(59B)으로 통합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을 일괄 진행하며, 동일한 주거면적 일지라도 층별, 형태별에 따른 공급금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약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면적 동일하나, 주방 창 유무에 따른 차이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 | 039.9878 | 049.9994 | 059.9984A | 059.9978B | 059.9985C |
|--------------|----------|----------|-----------|-----------|-----------|
| 거부즈태 드이 야시고기 | 20 | 49 | 59A | 59B | FOC |
| 선근무극 등의 극극표기 | 39 | 49 | 39A | 59B1 59B2 | - 59C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 O! | [‡] 식 | 공급 | 동별 | | 해당 | | 공급금액 | | 계약금 | 10%) | | | 중도금 | | | | 잔금(30%) |
|----------|-----|----------------|-----|------------------------------|---------|----|-------------|-------------|-------------|------------|------------|------------|------------|------------|------------|------------|------------|-------------|
| 주택형 | | ' | 세대 | 8 년 (라인별) | 층구분 | 세대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 후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 지정일 |
| | | | 수 | · ·/ | | 수 | | | | | 1개월 내 | 2024-12-27 | 2025-08-27 | 2026-03-27 | 2026-11-27 | 2027-02-26 | 2027-05-27 | |
| | | | | | 9-10층 | 8 | 234,231,000 | 244,769,000 | 479,000,000 | 10,000,000 | 37,900,000 | 47,900,000 | 47,900,000 | 47,900,000 | 47,900,000 | 47,900,000 | 47,900,000 | 143,700,000 |
| | | | | | 11-15층 | 30 | 239,121,000 | 249,879,000 | 489,000,000 | 10,000,000 | 3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146,700,000 |
| 039.9878 | 3 | 39 | 90 | 102동 1호~6호 | 16-20층 | 28 | 244,011,000 | 254,989,000 | 499,000,000 | 10,000,000 | 3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149,700,000 |
| | | | | | 21-25층 | 20 | 248,901,000 | 260,099,000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 | | | | 26층 | 4 | 253,302,000 | 264,698,000 | 518,000,000 | 10,000,000 | 4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155,400,000 |
| | | | | | 2-3층 | 12 | 302,691,000 | 316,309,000 | 619,000,000 | 10,000,000 | 5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185,700,000 |
| | | | | | 4-5층 | 12 | 309,048,000 | 322,952,000 | 632,000,000 | 10,000,000 | 5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189,600,000 |
| 049.9994 | , | 19 | 138 | 101동 1호~6호 | 6-10층 | 30 | 315,894,000 | 330,106,000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043.3334 | 4 | +3 | 130 | 102동 7호~9호 | 11-15층 | 40 | 322,251,000 | 336,749,000 | 659,000,000 | 10,000,000 | 5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197,700,000 |
| | | | | | 16-20층 | 35 | 328,608,000 | 343,392,000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 | | | | 21-24층 | 9 | 334,965,000 | 350,035,000 | 685,000,000 | 10,000,000 | 58,500,000 | 68,500,000 | 68,500,000 | 68,500,000 | 68,500,000 | 68,500,000 | 68,500,000 | 205,500,000 |
| | | | | 101동 7호~8호 103동 1호~3호 | 1층 | 5 | 381,909,000 | 399,091,000 | 781,000,000 | 10,000,000 | 6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234,300,000 |
| | | | | 104동 1호~2호 | 2-3층 | 64 | 390,222,000 | 407,778,000 | 798,000,000 | 10,000,000 | 6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239,400,000 |
| | | | | 105동 1호~3호 106동 1호~3호 | 4-5층 | 59 | 398,535,000 | 416,465,000 | 815,000,000 | 10,000,000 | 7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244,500,000 |
| 059.9984 | - | . | 107 | 107동 1호~2호 108동1호~2호,4호 | 6-10층 | 25 | 406,848,000 | 425,152,000 | 832,000,000 | 10,000,000 | 7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249,600,000 |
| Α | 55 | 9A | 197 | 109동1호 110동1호~2호 | 11-15층 | 21 | 415,161,000 | 433,839,000 | 849,000,000 | 10,000,000 | 7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54,700,000 |
| | | | | 111동1호~2호 112동4호~5호 | 16-19층 | 15 | 423,474,000 | 442,526,000 | 866,000,000 | 10,000,000 | 7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259,800,000 |
| | | | | 113동 1호 | 21-22층 | 4 | 431,787,000 | 451,213,000 | 883,000,000 | 10,000,000 | 7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264,900,000 |
| | | | | 114동1호~2호,5호 115동1호~2호,5호 | 27-28층 | 4 | 439,611,000 | 459,389,000 | 899,000,000 | 10,000,000 | 7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269,700,000 |
| | | | | | 1층 | 3 | 383,376,000 | 400,624,000 | 784,000,000 | 10,000,000 | 68,400,000 | 78,400,000 | 78,400,000 | 78,400,000 | 78,400,000 | 78,400,000 | 78,400,000 | 235,200,000 |
| | | | | 109동 2호 110동 3호 | 2-3층 | 10 | 391,689,000 | 409,311,000 | 801,000,000 | 10,000,000 | 7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240,300,000 |
| | | 59B1 | 44 | 113동 2호 | 4-5층 | 10 | 400,002,000 | 417,998,000 | 818,000,000 | 10,000,000 | 71,800,000 | 81,800,000 | 81,800,000 | 81,800,000 | 81,800,000 | 81,800,000 | 81,800,000 | 245,400,000 |
| | | | | 114동 4호 115동 4호 | 6-10층 | 19 | 408,315,000 | 426,685,000 | 835,000,000 | 10,000,000 | 7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250,500,000 |
| 059.9978 | 59B | | | 1136 42 | 17, 19층 | 2 | 424,941,000 | 444,059,000 | 869,000,000 | 10,000,000 | 7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260,700,000 |
| В | 330 | | | | 1층 | 1 | 375,552,000 | 392,448,000 | 768,000,000 | 10,000,000 | 6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230,400,000 |
| | | | | | 2-3층 | 2 | 383,865,000 | 401,135,000 | 785,000,000 | 10,000,000 | 6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235,500,000 |
| | | 59B2 | 12 | 108동 3호 | 4-5층 | 2 | 391,689,000 | 409,311,000 | 801,000,000 | 10,000,000 | 7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240,300,000 |
| | | | | | 6-10층 | 5 | 400,002,000 | 417,998,000 | 818,000,000 | 10,000,000 | 71,800,000 | 81,800,000 | 81,800,000 | 81,800,000 | 81,800,000 | 81,800,000 | 81,800,000 | 245,400,000 |
| | | | | | 11-12층 | 2 | 408,315,000 | 426,685,000 | 835,000,000 | 10,000,000 | 7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250,500,000 |

| | | | | 1층 | 3 | 381,909,000 | 399,091,000 | 781,000,000 | 10,000,000 | 6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234,300,000 |
|----------|-----|----|--------------------|---------|----|-------------|-------------|-------------|------------|------------|------------|------------|------------|------------|------------|------------|-------------|
| | | | 109동 3호 | 2-3층 | 10 | 390,222,000 | 407,778,000 | 798,000,000 | 10,000,000 | 6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239,400,000 |
| 059.9985 | 59C | 52 | 110동 4호 113동 3호 | 4-5층 | 10 | 398,535,000 | 416,465,000 | 815,000,000 | 10,000,000 | 7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244,500,000 |
| С | | | 114동 3호 | 6-10층 | 25 | 406,848,000 | 425,152,000 | 832,000,000 | 10,000,000 | 7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249,600,000 |
| | | | 115동 3호 | 11, 14층 | 3 | 415,161,000 | 433,839,000 | 849,000,000 | 10,000,000 | 7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54,700,000 |
| | | | | 19층 | 1 | 423,474,000 | 442,526,000 | 866,000,000 | 10,000,000 | 7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259,800,000 |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타입 중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한 59B1, 59B2 타입은 주택형 059.9978B형(59B)으로 통합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을 일괄 진행하며, 동일한 주거면적 일지라도 층별, 형태별에 따른 공급금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약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면적 동일하나, 주방 창 유무에 따른 차이 있음. 59B1 : 주방창 있음 / 59B2 : 주방창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가전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 분(약식표기) | 39 | 49 | 59A | 59B | 59C | 합 계 |
|------------|---------------------|----|----|-----|-----|-----|-----|
| | 국가유공자 | 1 | 1 | 7 | 2 | 2 | 13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2 | 6 | 2 | 2 | 13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2 | 2 | 1 | 1 | 7 |
| | 장애인 | 0 | 3 | 9 | 0 | 3 | 15 |
| | 중소기업 근로자 | 0 | 1 | 2 | 1 | 1 | 5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50%) | 0 | 0 | 9 | 2 | 2 | 13 |
| 디자녀기구 득필증법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50%) | 0 | 0 | 9 | 2 | 2 | 13 |
| 신혼 | 부부 특별공급 | 12 | 17 | 42 | 10 | 14 | 95 |
| 노부. | 0 | 0 | 11 | 2 | 2 | 15 | |
| 생이 | 최초 특별공급 | 9 | 14 | 37 | 7 | 7 | 74 |
| | 합 계 | 24 | 40 | 134 | 29 | 36 | 263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구분 | | | 내용 | | | | | | | | |
|------|------------------------------------------------------------------------------------------------------------------------------------------------------------------------|------------------------------------------------------------------------------------------------------|------------------------------------------------------------------------------------------------------------------------------------------------------------------------------------------------------------------|--|--|--|--|--|--|--|--|
| |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 2024.03.25. 시행된 「주택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 | 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연 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히 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아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 | | | | | | | |
|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 |
| 공급기준 | 당첨자빌 | 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Somewer EC 17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청약통장 자 겨오거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u> </u> | |
|---------------|---------------------|---------------|-----------|
| 구 분 | 광명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ТЕ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 전용면적 85m²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m²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x27;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3세대

| 구분 | | 내용 | | | | | | |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 | | | | | | |
| | 구분 | 관련 법규 | 해당기관 | | | | | | | |
| |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국가보훈처 |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 | | | | | |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 | | | | |
| | |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 | | | |
| | 장애인 [청약통장 불필요]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 | | | | | |
| | |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 | | | | | |
| 당첨자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 | ·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 | | | | | |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Ç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6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 .일 현재 광당 | 명 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 | 기도, 서 | 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 | 셨더라도 입격 | 우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시 | 네대구성 | 원이면 신청가능함 | | | | | | | |
| 대상자 | ■ 만19세 미만의 자녀 | 2명 이상(태 | 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 | 분 | | | | | | | | |
| | | | | |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 | | | |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
| | ■ 정착용성 가입기간 6개월 정파(시역될·전역될 에서음적 이성)만 문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 | | | | | | | | | |
| | | _ | _ | _ | | | | | | | | |
| | | 付주자 (광명시 |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 기타지역 | 역 거주자(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 | | | |
| | ■ ②배점 | | | | | | | | | | | |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 | |
| | | | 기준 | 점수 | 비포 | | | | | | | |
| | 계계 | 100 | | | | | | | | | | |
| | | | 4명 이상 | 40 | | | | | |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3명 | 3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 |
| | | | 2명 | 25 | | | | | | | | |
| 당첨자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2명 | 15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 |
| | 6π ⁴ ⁴ ¹ ¹ ¹ (2) | 13 | 1명 | 5 |] - 납부자포함증포를 현재 현0재 미원의 승규의 자디(대의, 탑경자의 포함) | | | | | | | |
| 선정방법 | | | |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 | | | | | | |
| | | | 3세대 이상 | 5 |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 | | |
| | 세대구성(3) | 5 | 140 77 | |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 | | | | | | |
| | | | 한부모 가족 | 5 |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 | | | |
| | | | 1014 OIAF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 | | | | | | |
| | | | 10년 이상 | 20 |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 | | |
| | 무주택기간(4) | 2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 | | | | | | |
| | 十十 in 71 in (4) | 20 | 32 -10 102 -12 | .5 |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 | | | | |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 | | | | | | |
| | | | | |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시·도 | 4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거주기간(5) | 15 |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5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50%를 광명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함.),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4-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95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 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신혼부부는 혼인신 | <u> </u> 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 | | | | | |
|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 | | | | | | | |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 | | | | | | |
|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 | | | | | | | |
| |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 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 | | | | |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 | | | | | | | |
| | ■ ①소득구분 | | | | | | | | | |
| | 단계 소득구분 내용 | | | | | | | | | |
| 당첨자 | |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 | | | | | |
| 선정방법 | 1다게 |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 | | | | | |
| 2002 | | (137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신생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 | | | | | |
| | 2단계 | (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 | | | | | |
| | | (37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
| 3단계 | (35%)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4단계 | 일반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 4인계 | (15%)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 그건계 | Тёон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비고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4.04.25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비율 | | | | | |
|---------|----------------|----|----|----|----|
| 31 | <u>!</u> 이하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 부부 중 한 명만 | 100% 초과 | 7,004,510원~ | 8,248,468원~ | 8,775,072원~ | 9,563,283원~ | 10,351,494원~ | 11,139,705원~ |
| 신생아일반공급, |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9,806,313원 | 11,547,854원 | 12,285,099원 | 13,388,595원 | 14,492,090원 | 15,595,586원 |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 120% 초과 | 8,405,412원~ | 9,898,161원~ | 10,530,086원~ | 11,475,939원~ | 12,421,793원~ | 13,367,646원~ |
| |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추첨공급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 | | 내용 |
|---------|-----------|-----|----------------|-----------------------------------|-----------------------------------------------|
| | | | - 건축물가 시가표준 | | 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
| | | 건축물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T = 1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토지가액 | 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 | 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 부동산 | 3억3,100만원 | | 단, 아래 | 경우는 제외 | |
| (건물+토지) | 이하 | | * 「농지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 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
| | | | 농업인고 | 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
| | | 토지 | *「초지법 |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 우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
| | | 포시 | 허가증의 | 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 | 경우 |
| | | | * 공부상 |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 용되고 있는 경우 |
| | | | * 종중소유 | 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 |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
| | | | 제한을 |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 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 | - 건축물가역 | 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 | 서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15세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8년 이상 ~ 9년 미만 18 0 1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2 20 1년 이상 ~ 2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①무주택기간 32 4 22 2년 이상 ~ 3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6 3년 이상 ~ 4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 0명 | 5 | 4명 | 25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30 | | |
| | @107171 | 33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 | 3명 | 20 | | | | |
|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 | | | | |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 | l액, 가입자 명의변경· | 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 함 | | | | |
|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 | 자 및 그 배우자, 피 | 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 산정 | | | | |
| 비고 |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 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 | <u>-</u> 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 | 간에서 제외 | | | | |
|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 | 속(피부양자의 배우자 |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 해당 | | | | |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74세대

| 구분 | 내용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 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 |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 대상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 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 |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 |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당첨자 |
|------|
| 선정방법 |

비고

| 단계 | 소득구분 | | 내용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 | |
| | (15%) | 세내의 철평균소득이 선물 |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 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 | |
| 2단계 | (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 네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3단계 | 우선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36.1 | (35%) | 에테크 글러만보다의 근근도 모시는모시 기부전부글 글러만보다다 130% 의의근 문 | | | |
| 4단계 | 일반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70/11 | (15%) | | | | |
| | | 혼인 중이거나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 | |
| r C L 7H | 추첨공급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5단계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 | |
| | |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사업주체 참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04.25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금액 | | | |
|------------------|-------------------------|------------------------|--------------|--------------|--------------|--------------|--------------|--------------|--|
| | エラーモ | 미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 신생아일반공급, | | 130% 초과 | 9,105,863원~ | 10,723,008원~ | 11,407,593원~ | 12,432,268원~ | 13,456,942원~ | 14,481,616원~ | |
| 일반공급 |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추첨공급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 구분 | 내용 | | |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 | | | | | |
| 대상자 | 부양) | | | | | | |
| |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1순위 | | | | | | |
|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 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 | | | | |
| | | | | | | | |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제 | l축에 가입하여 12 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 |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 |
| 청약통장 |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 |
| 자격요건 | | | | | | | |
| | 구 분 | 광명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 |
| | T E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 | |
| |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 | | | | |
| | 전용면적 102m²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 |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 | 가점제 | 추첨제 | |
|--------------|-------------|-----|-----|
| 전용면적 60m² 이하 | 당사 모든 타입 적용 | 40% | 6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①무주택기간 | 3 | 3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35 | | 0명 | 5 | 4명 | 25 |
| ②부양가족수 | | | 1명 | 10 | 5명 | 30 |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③입주자저축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가입기간 | 17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기합기간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메주시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

| |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 |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
|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 |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 |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 |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③입주자저축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 가입기간 | 납구시시국의 승규, 급액, 기납시 경의한경을 한 경구에도 외조 기납을을 기군으로 기납기산을 산경 |
| 주택소유여부 및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
| 무주택기간 | 생꾸무극기간 국용기간 및 생무용기국의 단통 국용기간에 따라 무극보다 하무를 단통하기의 무무극기단을 단통하다는 공무해는 무극용법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산정기준 |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구분 | Ē | 청약 일정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 특별공급 | | 2024.05.07.(화) | | |
| OIHLZZ | 1순위 | 2024.05.08.(수) | 2024.05.16.(목) | |
| 일반공급 | 2순위 | 2024.05.09.(목)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진행중이더라도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 | | | |
|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 | | | |
| 추가서류 |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 | | | |
| (배우자 포함) |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 | |
|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 | | | | |
|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 | | |
|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 | |
|---------------------------|----------------------------------------------------------------------------------------------------------------------------------------------------------------------------------------------------------------------------------------------------------------------------------------------------------------------------------------------------------------------------------------------------|--|--|--|--|--|
|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5.16.(목) ~ 2024.05.25(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 | |

- **제공일시** : 2024.05.1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자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화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 제출장소 | 비고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2024.05.17.(금) ~ 2024.05.22.(수) | 견본주택 | 방문예약제 (예정) |
| (예비당첨자 포함) | 10:00 ~ 16:00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859-8) | |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 서 | 류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0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_ | 0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0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청약자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공통서류 | 0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 0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 0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 | | 0 | 복무확인서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0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 0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0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0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 . =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직계비속 |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0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출산 이행각서 | 또는 | • 임신의 경우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0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신혼부부 | 0 | | 소득증빙서류 |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특별공급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신생아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 | | 0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출산 이행각서 | 비누시 | • 임신의 경우 |

| | |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0 | 입양관계등명시 | #40FT [I] | |
| | | 0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 | | | * 이기계 * 명 나 (나 비) | 세대원 |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 |
| | | | | |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노부모부양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특별공급 | 0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 | | | 7.0.C.3.o.4.4.4.10. | |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_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 | | | | |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0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 | 0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0 | | 소득 증빙서류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0 | |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0 | | 청약자 및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 | | | | 세대원 |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0 | 임신진단서 또는 | 청약자 또는 | •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
| 생애최초 - | | | 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 * EC & CC 네와 그는 BO자리를 기구한구에 그림까지 내린 & 구 |
| 등에되고 특별공급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7208 | | | | 배우자 |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신생아 |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 | | 0 | 임신진단서 또는 |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 | | 0 |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출산 이행각서 |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
| | | O | 구인증목표요관(경제) | 국계근국 |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0 | 위임장 |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제3자 대리인 | | 0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 신청 시 | | 0 | 인심증정시 | |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추가서류 | | 0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0 | 도장 | 네티핀 | •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 | | 0 | |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역적 - 통보를 - | | 0 | _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0 | 앵 구택에 대한 소영사료 | 에 당구택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받은자 | | 0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7151 | | | 그 외 사업주체가 | | 차이지의 기계이가 드은 차이쉬가 이렇어 비어즈네가 이그런도 나른 이네 |
| 기타 | | 0 | 요구하는 자료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 발급처 |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책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대법원 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①,②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 근 로 자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 ල රා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
| 자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 ① 세무서, 해당직장② |

| |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 │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내용 참조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 • 인단도 [월]일구터 납구적포압하고일 현재까지 중요국을 납하철 구 있는 자유 | 경기 대중 점조 |
| 2022.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① 견본주택 비치② 세무서 |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
| 자격입증서류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① 해당직장/세무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② 건강보험공단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 | | | I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구비서류

| | 서류유형 | | | 발급기 | |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0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0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 0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청약자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0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 | 0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 0 |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
| | | 0 | 복무확인서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0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 | 0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
| #1017.07 | | | | |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0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I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청약자 |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 0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추가서류 | | 0 | 당첨사실 확인서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가점제, | | 0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예비입주자)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0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 | | | |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0 | 위임장 |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제3자 | |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대리인 | 0 | 인감증명서 | 254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신청 시 | | | |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추가서류 | 0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0 | 도장 | 네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
| - 부적격 | 0 | |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포크크 통보를 | 0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0 | |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받은 분 | 0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 0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자료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상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정 | 계 약 장 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4.05.27.(월) ~ 2024.05.29.(수) 10:00 ~ 16:00 |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859-8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항목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1차 계약금) | KB국민은행 | 215201-04-383498 | 광명제9알(R)구역조합(롯데건설)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로 납부하여야 하고,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국민은행, 215201-04-383498, 광명제9알(R)구역조합(롯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502동 1403호 홍길동 : 5021403홍길동 / 503동 201호 홍길동 : 5030201홍길동)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 서류 | 유형 | | | | |
|---------------|---------------------------|----|------------------------|----------------|----------------------------------------------------------------|--|
| 구분 | 구분 _{필수} 추가 (해당자)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0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
| | 0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0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본인 계약 시 | 0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
| | 0 |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0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접수 장소에 비치(6억 초과주택에 한함) | |
| | | 0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0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대리인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 (청약신청자) |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 | |
| 신청시 추가사항 | 0 | | 위임장 | (중취연중시) | • 견본주택 비치 | |
| | 0 | | 신분증, 도장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39, 49 타입), "중도금 이자후불제"(59타입 전체)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광명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간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 465101-01-305128 | 롯데건설(주) |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공급)주체 및 확장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롯데건설(주))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입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견본주택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재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502동 1403호 홍길동 : 5021403홍길동 / 503동 201호 홍길동 : 5030201홍길동)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로 부여되며, 모계좌 [국민은행, 465101-01-305128, 롯데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대금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 포함)

| 즈태형 (FLOI)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90%) |
|------------|-------------|-----------|---------|
| 구력당 (미립) | 물꼬니 쉭잉 중요요ㅋ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49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59A | 13,100,000 | 1,310,000 | 11,790,000 |
| 59B | 11,300,000 | 1,130,000 | 10,170,000 |
| 59C | 13,400,000 | 1,340,000 | 12,06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창호류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시설은 확장 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 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 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측벽/세대 간 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좌/우,상,하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 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 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본 공사 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자 겸 분양공급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 할 경우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비확장 시 설치공간 및 확장제공품목의 차이로 인해 발코니 확장형 계약 세대만 옵션선택이 가능합니다.

1. 시스템 에어컨

| 품목 | 주택형 (타입) | 제조사 | | 설치유형 | |
|-----|------------|----------|-----|---------------------------|-----------|
| | 20 | | 선택1 | 거실+침실 | 3,800,000 |
| | 39 | | 선택2 | 거실+침실(고급형, UV기능) | 4,200,000 |
| | | | 선택1 | 거실+안방 | 3,700,000 |
| | 49 | | 선택2 | 거실+안방(고급형, UV기능) | 4,100,000 |
| | 49 | | 선택3 | 거실+안방+침실1 | 4,800,000 |
| | | | 선택4 | 거실+안방+침실1(고급형, UV기능) | 5,300,000 |
| | | 59A LG - | 선택1 | 거실+안방 | 3,800,000 |
| | 59A 시스템 | | 선택2 | 거실+안방(고급형, UV기능) | 4,200,000 |
| 시스템 | | | 선택3 | 거실+안방+침실1+다목적실 | 5,900,000 |
| 에어컨 | | | 선택4 | 거실+안방+침실1+다목적실(고급형, UV기능) | 6,700,000 |
| | | | 선택1 | 거실+안방 | 3,800,000 |
| | EOD | | 선택2 | 거실+안방(고급형, UV기능) | 4,300,000 |
| | 296 | | 선택3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5,800,000 |
| | | | 선택4 | 거실+안방+침실1+침실2(고급형, UV기능) | 6,500,000 |
| | 59C | | 선택1 | 거실+안방 | 3,900,000 |
| | | | 선택2 | 거실+안방(고급형, UV기능) | 4,300,000 |
| | | | 선택3 | 거실+안방+침실1+다목적실 | 6,000,000 |
| | | | 선택4 | 거실+안방+침실1+다목적실(고급형, UV기능) | 6,700,000 |

- 시스템에어컨은 각 실당 1대씩 시공되며 침실1, 침실2는 설치대수가 아닌 실명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공급)주체 및 공급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롯데건설(주))는 시공사 롯데건설(주)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세대내 냉매매입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선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거실, 안방에만 시공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 가전옵션

| | | | 공급 | 금액 | | |
|----------------------|---------------|-----------|-----------------|-----------|-----------------------|---------|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공급금액 게야되 (100() | 잔금 (90%) | 주택형(약식) | 제조사 |
| | | | 계약시 (10%) | 입주지정일 | | |
| 4도어 냉장고 | RF60B91R2AP | 4,000,000 | 400,000 | 3,600,000 | 39, 49 | 삼성전자 |
| 4포의 88포 | M622GBB352 | 4,600,000 | 460,000 | 4,140,000 | 39, 49 | LG전자 |
| 4도어 냉장고 + | RF60B91R2AP + | 6,800,000 | 680,000 | 6,120,000 | | 삼성전자 |
|] 3도어 김치냉장고 + · | RQ33A74E1AP | 0,000,000 | 000,000 | 0,120,000 | 59A, 59B, 59C | - 0 L/I |
| | M622GBB352 + | 7,500,000 | 750,000 | 6,750,000 | 39A, 39B, 39C | LG전자 |
| 수납 특화형 | Z332GBB151 | 7,300,000 | 730,000 | 0,730,000 | | LG전시 |
| 식기세척기 | DIB22S | 1,500,000 | 150,000 | 1,350,000 | 39, 49, 59A, 59B, 59C | LG전자 |
| 3구 하이브리드쿡탑 | CIHR-D302FB | 400,000 | 40,000 | 360,000 | 39, 49, 59A, 59B, 59C | 쿠쿠 |
| 전기오븐 | NQ36A6555CK | 400,000 | 40,000 | 360,000 | 39, 49, 59A, 59B, 59C | 삼성 |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옵션 선택형(빌트인냉장고 등)은 제조사에 따라 표면마감이 상이하오니 모델하우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의 가전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

| 주택형(약식)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90%) |
|-----------|------------------------|-----------|-----------|-----------|
| T 70(7 7) | | 0 8 8 7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거실스타일업 ① 벽부형(시트판넬)] | 2,200,000 | 220,000 | 1,980,000 |
| | -소파 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2,200,000 | 220,000 | 1,900,000 |
| | [주방스타일업] | 2,900,000 | 290,000 | 2,610,000 |
| 20 | -주방벽/상판ENG | 2,900,000 | 290,000 | 2,010,000 |
| 39 | [욕실 스타일업] | | | |
| | - 유럽산 욕실벽 타일(600*600) | 2 200 000 | 220,000 | 2.070.000 |
| | - ENG젠다이 하부벽 | 2,300,000 | 230,000 | 2,070,000 |
| |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 | |

|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 , , | | | |
|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 | | |
| | - 복도 고급매입등 | 2,700,000 | 270,000 | 2,430,000 | |
| | - 안방/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 | - 거실/침실/안방 고급직부등 | | | | |
| | [거실스타일업 ② 벽부형(거실아트월, 복도 세라믹타일+시트판넬)] | | | | |
| | - 거실아트월, 복도유럽산 세라믹타일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49 | - 소파뒷벽, 복도, 주방벽시트판넬 | | , | | |
| 49 | [주방스타일업] | 2 222 222 | 222.222 | | |
| | - 주방벽 / 상판ENG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 [욕실 스타일업] | | | | |
| | - 유럽산 욕실벽타일(600*600) | 2 222 222 | 222.000 | 2.070.000 | |
| | - ENG젠다이 하부벽 | 2,300,000 | 230,000 | 2,070,000 | |
| |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 | | |
| | 주방 냉장고장 | 700,000 | 70,000 | 630,000 | |
| | 안방 붙박이장 (여닫이형)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 강마루 (텍스쳐 와이드, 165*1,205*7.5T) | 500,000 | 50,000 | 450,000 | |
| |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 | | | |
|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 400,000 | 3,600,000 | |
| | - 복도, 주방 고급매입등 | 4,000,000 | | | |
| | - 거실/침실/다목적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 - 거실/침실/안방/다목적실 고급직부등, 주방고급 식탁등 | | | | |
| | [거실스타일업 ② 벽부형] | | | | |
| | - 거실 아트월, 복도 유럽산 세라믹타일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 - 소파 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 | | |
| | [주방스타일업] | 2.700.000 | 270.000 | 2 220 000 | |
| 59A | - 주방벽/상판ENG | 3,700,000 | 370,000 | 3,330,000 | |
| | [욕실1 스타일업] | | | | |
| | - 유럽산 욕실벽타일 (600*600) | 2 222 222 | 222.000 | | |
| | - ENG 젠다이 하부벽 / 욕조 에이프런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 | | |
| | [욕실2 스타일업] | | | | |
| | - - 유럽산 욕실벽타일 (600*600) | | | | |
| | - ENG젠다이 하부벽 | 2,400,000 | 240,000 | 2,160,000 | |
| |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 | | |
| | 안방 붙박이장 (슬라이딩형)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강마루 (텍스쳐 와이드, 165*1,205*7.5T) | 700,000 | 70,000 | 630,000 | |
| 59B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 | | | |
|-----|--------------------------------------|-----------------------------------------|---------|-----------|--|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 | 3,600,000 | |
| | -복도, 주방 고급 매입등 | 4,000,000 | 400,000 | | |
| | -거실/침실1, 2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 , | |
| | -거실/침실1, 2/ 안방 고급직부등, 주방 고급식탁등 | | | | |
| | [거실스타일업 ② 벽부형] | | | | |
| | -거실아트월, 복도 유럽산 세라믹타일 | 2,100,000 | 210,000 | 1,890,000 | |
| | -소파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_,,,,,,,,,,,,,,,,,,,,,,,,,,,,,,,,,,,,,, | 2.0,000 | 1,000,000 | |
| | [주방스타일업] | | | | |
| | -주방벽/ 상판ENG | 3,900,000 | 390,000 | 3,510,000 | |
| | [욕실1 스타일업] | | | | |
| | -유럽산 욕실벽타일(600*600) | | | | |
| | -ENG젠다이 하부벽 / 욕조에이프런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 | | |
| | [욕실2 스타일업] | | | | |
| | -유럽산 욕실벽타일(600*600) | | | | |
| | -ENG젠다이 하부벽 | 2,400,000 | 240,000 | 2,160,000 | |
| | -비데일체형고급양변기,수납형세면대 | | | | |
| | 침실2 붙박이장(수납 강화형)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 강마루 (텍스쳐 와이드, 165*1,205*7.5T) | 700,000 | 70,000 | 630,000 | |
|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 [거실스타일업 ① 천정형] | | | | |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 | | |
| | -복도, 주방 고급 매입등 | 4,000,000 | 400,000 | 3,600,000 | |
| | -거실/침실/다목적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 | | | |
| | -거실/안방/침실/다목적실 고급 직부등, 주방 고급 식탁등 | | | | |
| | [거실스타일업 ② 벽부형] | | | | |
| | -거실 아트월, 복도 유럽산 세라믹타일 | 2,200,000 | 220,000 | 1,980,000 | |
| | -소파뒷벽,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 | | | |
| 59C | [주방스타일업] | | | | |
| 350 | - -주방벽 / 상판ENG | 3,900,000 | 390,000 | 3,510,000 | |
| | [욕실1 스타일업] | | | | |
| | -유럽산 욕실벽타일(600*600) | | | | |
| | -ENG 젠다이 하부벽 / 욕조 에이프런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 | | |
| | [욕실2 스타일업] | | | | |
| | -유럽산 욕실벽타일 (600*600) | | | | |
| | -ㅠᆸ된 독일되다일 (666 666) -ENG 젠다이 하부벽 | 2,400,000 | 240,000 | 2,160,000 | |
| | | | | | |
|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 | | | |

| 안방 붙박이장 (슬라이딩형)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강마루 (텍스쳐 와이드, 165*1,205*7.5T) | 600,000 | 60,000 | 540,000 |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 품목의 제약상 발코니 확장형 계약 세대만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49타입 주방 냉장고장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 품목의 제약상 확장형이 아닌 기본형에서도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상세 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 중 시스템 에어컨은 3년, 빌트인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 쿡탑) 2년, 붙박이가구는 2년, 엔지니어드 스톤 등은 2년간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입주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제외)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 품목은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개별 유의사항은 품목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옵션 선택이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계(확장 기본형)대로 시공됩니다.
- 준공 이후 현관 중문을 개별적으로 설치 시 현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 미설치로 인해 현관 내 화재 감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건축부문 설계기준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
|----------------------------|--------------------------------------|----|------------------------------------------------------------------------------------------------------------------------------------------------------------|
| (제7조 제3항 제1호)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설개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전기부문 설계기준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제3항 제3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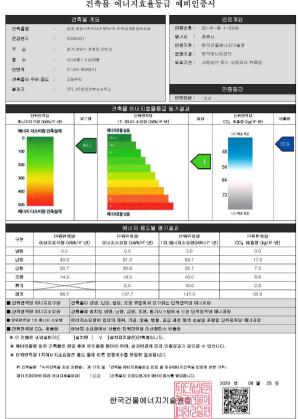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64조 및 「주택법」제39조)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1<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명: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9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2. 신 청 자: 광명제9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5등 275-3번지 일원

|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 성능동급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등급 |
|--------------------------------|------|--------------------------------------------|--------------|
| | | 0.000 | 행당없음 |
| 1. 경량총계음 차단성능 | **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4.75.00.00 |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22. 생태면적률 | * |
| 4. 교통소음(도로, 횡도)에 대한 실내 - 의 소음도 | * | 23. 비오름 조성 | 해당없음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 | 25. 자연 한계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나. 구조 관련 등급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27. 자공은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 1, 내구성 | * | | |
| 2. 가변성 | *** | 리, 생활활경 관련 등급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성능함목 | 성능등급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5. 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2. 과도한 지하계발 지양 | 해당었음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3. 토공사 철성토량 최소화 | 해당없음 | 7. 사용자 매뉴열 제공 | ****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8. 녹색건축인중 관련 정보제공 | * |
| 5. 에너지 성능 | ***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7.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8. 저단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해당없음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해당없음 | 13. 홈네트워크 중합시스템 | * |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
| 11. 저란소 자자의 사용 | ** | | |
| 12. 자원순환 자자의 사용 | **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성능함목 | 성능등급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 | 해당없음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16. 저항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2. 재연설비 | * |
| 16. 빗물관리 | 해당없음 | 3. 내화성능 | * |
| 7. 빗물 및 유충지하수 이용 | ** | 4. 수펌피난거리 | * |
| | | | - |

「녹색건축골 조성 지원범」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살이 공동주백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1월 03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5. 복도 및 게단 유효너비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구분 | 등급 |
|------|------------|
| 내진능력 | VII-0.204g |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 제29의 2)

| 구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1층 | 2.7m (일부구간 2.3m) | 2.7m |
| 지하 2층 | 2.3m | 2.7m |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배정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인 광명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 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 고저차로 인한 방음시설, 옹벽 등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자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누수, 주변 세대 피해 등)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공용홀 및 홈페이지 CG 등 단지배치도 이미지 상 필로티 및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 표기하였으니, 필로티 및 최하층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견본주택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문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대,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 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제조사, 규격 및 사양(유리 및 손잡이 포함),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설계 및 단지 관련 주요 고지사항

| 구분 | | |
|-----------|--|---------------------------------------------------------------------------------------------------------------------------------------------------------------------|
| <u>공통</u> | | •단지 외 주변 위해시설 입지 등 입주자에게 불리한 사항(인접 존치 현황) 등 사업 부지 현황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서측 주출입구변에는 폭 15m 도로, 단지 남측 보행자 주출입구변에는 폭 20m 도로, 단지 동남측 근생 주차 출입구변에는 8m 도로, 단지 북측 |

일부는 폭 6m도로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14동, 115동 동남측변에는 8m 도로, 111동, 110동 동남측변에는 10m 도로에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에는 일부 공원시설과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최고 높이 15층의 광명제일풍경채 아파트, 최고 높이 26층의 광명현진에버빌 아파트, 광명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단지 남측에는 최고 높이 26층의 광명해모로이연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상 공원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해당 공원시설 내 신설우회도로의 선형은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현재 개설된 임시도로 현황이 상이한 바, 임시도로 현황대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반영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공원 형태와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남측 근생 주차 출입구변 8m 도로에 접해 도시계획시설이 사업시행인가 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광명시청의 요청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공지 등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 •단지 경계선 밖 도로 및 도시계획시설은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일부 계획의 내용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당 단지가 속한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경계 내에는 공동주택 부지 외에 공원,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원,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은 추후 광명시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 •카달로그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 조경, 경계선형, 도로 및 보도 선형 및 패턴 등은 추후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구역경계 내 공동주택 부지에는 새마을 시장 이용을 위한 103동과 104동 사이 도로에 대한 폭원 6m의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어있고, 상시 개방 형태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인접해 있는 도로 및 공원 등은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한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건축물의 형태, 외부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존치하고 있는 전신주는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되지 않았으며, 전신주 외 기타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은 제기될 수 없습니다.
- •당 공동주택 단지 북측으로 일부 인접한 공원 계획은 본공사시 여건에 따라 단차 등 경사로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단지와의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층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공원 등은 기부채납부지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한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공 및 분양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 |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당 사업지의 대지경계 내에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로 디자인(조경계획, |
| |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패턴, 폭)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당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
| | 사업 승인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
| | •106동 문주 입구부근 상수도인입을 위한 맨홀이 설치 됩니다. 설치위치는 수도사업소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인근 공원 등의 기타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
| |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 휀스설치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휀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
| |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
| 구역경계 |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
| | 있습니다. •당 단지는 2019년 11월 최초 사업시행인가(2018년 12월 접수)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
| | *6 전시는 2019년 11월 되고 사업사용전기(2010년 12월 업무)을 전표한 사업용으로, 용피유용의 작용 가능한 업격기군(전환용단단 모임)에 대에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 | |
|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
| |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 | •각종 친환경 관련 인증사항은 인증 기준내에서 본공사 시 세부 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호 및 단열재 사양 등은 법적 기준열관류율에 |
| | 맞춰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 도서와 분양시의 모델하우스, 준공 시 상이하더라도 법적기준 및 인증 기준내의 변경일 시 민원을 제기할 수 OALLEL |
| | 없습니다. |
| | •조경 및 옹벽 계획등은 주택과 옹벽으로의 이격거리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108동 거리 : 최소 9.5m 최대 H : 3.5m, / 110동,111동 거리 : 최소 4.5 |
| 인허가 | 최대 H: 1.9 m, 114동, 115동거리: 최소 4.5m, 최대 H 2.5m) |
| |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을 |
| | 지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상 변경,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
| |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
| |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단지 조경 상품 개선을 위한 설계를 진행중이며, 조경 관련 제반사항(식재, 시설물, 포장 및 동선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설계변경(단지계획, 형태, 구조, 전기, 기타설비 등) 사항 및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
| |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 하지 않습니다. |
|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
| |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장 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
| 마김 | •본공사 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 " | ^세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 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
| |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
| |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 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 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됩니다.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
| |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
| | •견본주택은 49m², 59Am²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
| |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 •미건립 타입 중 59B1과 59B2의 경우 동일 면적과 평면구성이나, 동별 타입 조합에 따라 주방창호 설치 유뮤가 상이한 점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
| | 바랍니다. |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립한 참고용 주택으로 당현장 단위세대의 제공 품목, 마감 형태, 가구 디자인, 유상 옵션 상품 |
| | 구성 등은 계약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 모형, 세대 모형, 커뮤니티 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
| |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
| 비아 | 입문 지습니다.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
| 분양홍 | 당기의 결과에 떠나 나오 한경철 수 있습니다. |
| 건본 - | _{트택} •분양 옹보에 사용된 모형 및 CG는 소비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사업상을 우선하여 표현하였으며, 그 과성에서 존지 인접 현황(서승 수택단시, |
| | 도로, 전신주 등)의 표현이 간소화 혹은 삭제되었음을 인지하시고 다소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 제품과 무관합니다. |
|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 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
| |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 | •견본주택,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
| |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
| | |

| | |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 |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 |
| | | 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
| | |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 |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 시에는 사업승인 도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
| | |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
| | |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 |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
| | |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
| | |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 | | •공동주택부지내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공동주택과 공유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디자인, 색채, 마감, 내부 인테리어, 실별 구획 등은 사업주체의 |
| | |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공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
| | |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계획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주택 세대의 조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 | | •공동주택 주동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개소, 위치, 스펙 등은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
| | | 인접 주동의 세대에 빛반사, 눈부심 등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공동주택의 기타공용면적(관리실, 경비실, 부대복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면적 배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추후 실시설계 및 |
| | |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전용 혹은 기타공용부의 면적변동이 발생 할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그 시설물의 크기 및 높이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u>단지</u> | 공통사항 | •하기 강우 등으로 인하여 고저차이로 인해 단지외부에서 빗물 등이 단지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단지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입주자들은 이에 |
| | |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단지 동측에 공동주택-공원 경계 및 공동주택-새마을시장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는 항시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로서 본 |
| | | 단지에서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 제한이 불가합니다. |
| |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은 석재마감이며, |
| | | 부대복리시설은 일부 석재 및 강판이 적용되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에 따라 BI 위치 및 조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출입구,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
| | |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
| | | 수 있습니다. |
| |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사짐, 택배,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
| | |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 |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통학차량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주정차 공간이 조성되어 106동, 107동, 111동, 112동 저층세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 가 설치되는 경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수 있습니다.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전기/발전기실 DA 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고,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포켓정원 등),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부 혹은 외부에 자전거보관소, 휴게공간 등 조경시설(놀이, 운동 등)이 일부 동에 계획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간 협의 등에 따라 위치, 기능, 시설 등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합니다.
-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용할 수 없으며, 관상용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물놀이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나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 11개소(근린생활시설용 2개소 별도)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쓰레기이송설비(101동~103동, 104동과 105동, 108동과 109동은 투입구 공동 사용)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크기 및 디자인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합니다. •쓰레기이송설비 자동집하시설에 의한 쓰레기 컨테이너 반출은 114동 배면 지상1층 옥외에서 이루어지며 컨테이너 반출과 반출차량 운행시 냄새. 소음이 일정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이송설비 설치에 따른 쓰레기 컨테이너 반출 차량은 주출입구나 부출입구를 통하여 114동까지 지상 도로를 통행하며, 차량 운행시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가 일정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측 15M 도로변 주출입구 인근에는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인 키즈스테이션이 조성되어 106동, 107동, 111동 저층세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출입구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차량동선, 차량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시와 다르게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Ⅷ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a)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경수전에 공급되는 급수는 상수도가 아닌 우수처리시설에서 공급 됩니다.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됩니다.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1.104.105.111.112.114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_ 단, 3년이 지난 시점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차량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며 부출입구 인접 103동, 104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단지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인접 106.107동의 경우도 동일하며, 111,112동의 경우 출입구 차량과 공동주택 진입레벨이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주출입구 인접 주동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로티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동은 동별 1호 이상의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일부 동 중 필로티 하부 진입 공간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급기구가 설치되며, 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설치되고, 나미지는 1개층 필론티에 설치됩니다. 주등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고어벌 성이할 수 있습니다멜로티 및 독립형 동술입구의 각 동별 형태 및 사이즈, 캐노피 및 루비 등 지용의 현대가 동별로 성이할 수 있으며, 인접 저축세대에 시각적 간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며 이야 대한 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객동 별로타 내부 혹은 외부에 자전거보라고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따라 명부 동행에 불편이 있는 있으며, 저축 명부세대 소를 및 환경권 침해를 반복 수 있습니다전파트의 주동이 위치한 대지의 레텔 및 형태는 본공사시 주변레벨 및 단지내 레텔 개선을 위해 모인과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 및 소입니다단지내 레벨과 주변 레벨에 따른 토목문학의 마감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난 단치는 연접도로환에 따라 동병 도로 소용 및 병원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난 단치는 선접도로환에 따라 동병 도로 소용 및 병원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난 단치는 산업도 편접도로환에 따라 등병 도로 소용 및 병원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난 단치는 산업도 편접도로환에 따라 등병 도로 소용 및 병원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난 단치는 산업도 편접도로환에 따라 등병 도로 소용 및 병원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난 단치는 산업도 편접도로환에 따라 등병 도로 소용 및 병원에 발생을 수 있습니다한권, 발교나, 엘레베이터 등 설치로 전에 사생활이 점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병범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한권, 발교나, 엘레베이터 등 등의 설치로 전에 사생활이 점해될 수 있으니다한권, 발교나, 엘레베이터 등 설치로 사생활 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권, 발교나, 엘리베이터 등 설치로 사생활 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지하용,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증고, 전청교는 사상시 현장 여건에 따라 용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이라트 지하는, 1층 일보에 생각에 다른 원으로 인상 소음 및 진존이 발생을 수 있습니다가동 엘리베이타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사의 가운에 따라 사용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약전 필요이 되었습니다가동 등을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인계로 불가피한 사랑으로 면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101동 날치적에 목 20m도로가 위치하여, 남동학에 푹 종과 절차의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인계로 불가피한 사랑으로 면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101동 전체에 무실되는 계획되어 있으며, 주문과 전하여 근처실(문용환경실 및 살의기실 포함이이 가용에 1개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글세대의 소용, 개념 등 환경된 한다, 계획되어 있으며, 두원과 전하여 근처실(문용환경실 및 살의기실 포함이이 가용에 1개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음세대의 소용, 대체 등 환경보를 취해되어 있으면, 자문과 전하여 근처실(문용환경실 및 살의기실 포함이이 가용에 1개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음세대의 소용, 대체 등 환경보를 사면, 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에 오면의 문제에 가입을 수 있습니다101동 전체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라존 세대)에서 사유할 수 있으며, 등행이 불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101동 전체시설을 보내가 보내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에 오면의 간식을 존해된 수 있으면, 등행이 불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원리나다, 1101동 전체시설을 심수된 경반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에 요면의 간식을 존해된 수 있으면 이에 따른 보관을 보게 되어 있어 보관된 수 있습니다101동 전체시설을 목상부는 개별 세대(최라존 세대)에서 사유할 수 있으며, 등행이 불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관의 보관을 취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101동 전체시설을 보내가 보내가 하는 관계 기관을 보내가 기관을 보내가 보내가 되었다면 보내가 기관을 보내가 기관을 보내가 기관을 보내하는 모습니다101동 전체시설을 보내하는 기관을 보내하는 기관을 보내하는 기관을 보내기 기관 | | •각 동의 주동출입구는 1개층 필로티에 설치되며, 101동 1~6호, 102동 1~9호 라인 및 108동, 110동의 경우 1,2호 라인은 공용부 외부에 독립형으로 |
|-------------------------------------------------------------------------------------------------------------------------------------------------------------------------------------------------------------------------------------------------------------------------------------------------------------------------------------------------------------------------------------------------------------------------------------------------------------------------------------------------------------------------------------------------------------------------------------------------------------------------------------------------------------------------------------------------------------------------------------------------------------------------------------------------------------------------------------------------------------------------------------------------------------------------------------------------------------------------------------------------------------------------------------------------------------------------------------------------------------------------------------------------------------------------------------------------------------------------------------------------------------------------------------------------------------------------------------------------------------------------------------------------------------------------------------------------------------------------------------------------------------------------------------------------------------------------------------------------------------------------------------------------------------------------------------------------------------------------------------------------------------------------------------------------------------------------------------------------------------------------------------------------------------------------------------------------------------------------------------------------------------------------------------------------------------------------------------------------------------------------------|--------|---------------------------------------------------------------------------------------------|
| 일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각동 필로디 내부 혹은 외부에 자전기보건소 및 휴개공간이 설치되어 따라 일부 동형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한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주동이 위치한 대지의 레벨 및 형태는 본공사시 주변래벨 및 단지내 레벨 개선을 위해 도면과 상이하게 현장이건에 맞춰 변경 될 수 있습니다안지내 레벨과 주변 레벨에 따른 토목유벽의 마감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증보볼(모형 및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본 단지는 인접도로현황에 따라 동별 도로 소음 및 빗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본 단지는 시업지 내외부 단지에 다른 테크형 배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본 단지는 시업지 내외부 단지에 다른 테크형 배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I층 및 저경부 세대는 단치 내 보도 등의 설치로 만해 사명질이 참하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법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1층 및 저경부 세대는 단치 내 보도 등의 설치로 만해 사명질이 점에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법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1층 및 저경부 세대는 단치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명질이 점에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법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파트 지하는,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교, 천장교는 시공시 현장 이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는,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교, 천장교는 시공시 현장 이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는,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교, 천장교는 시공시 현장 이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약을 입대에다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증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기가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장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병에 따른 성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에 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종등 동물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아는 마관성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랑으로 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등 선계수에 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충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신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요 기당은 건체 1개층 필요되고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집하여 근세성(중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용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신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등 건세수일의 옥상부는 개발 세대실회하는 세대에서 사유할 수 있으나 등 형행 설계를 수 있으니다 101등 전체적의 목상부는 제발 세대실회하는 세대에서 사유할 수 있으나 등 형행 설계를 수 있으니다 101등 전체적의 목상부는 개발 세대실회하는 세대에서 사유할 수 있으나 등 전에 보기에 만든 원용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등 점차 작으로 남성 함께 보내용 보생의 주상을 가게 전략이 있어 전용계인 모리 당의 이에 따른 원용을 제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등 등록, 목록에 쓰레기본리수거장(쓰레기의 술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전용계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집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설치되고, 나머지는 1개층 필로티에 설치됩니다.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일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필로디 내부 혹은 외부에 자전거보관소 및 휴계공간이 성치됨에 따라 일부 동맹에 불편이 있음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주동이 위치한 대지의 레벨 및 형태는 본공사시 전경될 수 있으며, 분양종보불(모형 및 CG)과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레벨의 주변 레벨에 때문 토덕용벽의 마감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종보불(모형 및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반 단지는 언접도표현함에 따라 동별 도로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반 단지는 선접도표현함에 따라 동별 도로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반 단지는 선접도표현함에 따라 등별 도로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반 단지는 선접도표현함에 따라 등의 설치로 세계되어 있습니다. - 비리 상부에 위치한 주동의 축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이후, 막 저축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보를 이 생물을 이 생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후, 발리나, 엘래베이터를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후, 발리나, 엘래베이터를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장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래베이터와 연결한 제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용 및 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대별 한간 전면에 엘리베이터 홍생지로 사생할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리베이터와 연결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용 및 건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리베이터와 대학한 일반에 내가 생리하여 사용 사업증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장은 법인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신의 절치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면 이로인해 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장은 병원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남서속에 푹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속에 푹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충세대의 소용,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본속에 따라 건강하는 사람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가 생명을 수 있으니다. -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동 근생사실의 옥상부는 개월 서대점하층 세대점하는 사람에서 사용 할 수 있으니다. - 101동 그래스 보생을 산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렛이 조망의 간심을 조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등속, 북속에 쓰레기분리수가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실위되어 있어 작용세대의 소용, 품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5 등록, 북속에 쓰레기분리수가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실기되어 있어 작용세대의 소용, 남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5 등록, 북속에 쓰레기분리수가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실기되어 있어 되는 유명 보건 및 사생활 함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5 등록, 북속에 쓰레기분리수가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실기되어 있어 되는 모음 관리 및 사생활 함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5 등록, 북속에 쓰레기분리수가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실기되어 있어 되는 모음 보건을 관계를 수 있습니다. - 1015 등록, 북속에 쓰레기분리수가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실기되어 있어 되는 모음 관리를 보면 보건이 함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5 등록, 북속에 쓰레기본리는 기장(소래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실기되어 있어 되는 소용, 발생 관련 점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5 등록, 북속에 쓰레기본리는 기장(소래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실기되어 보다는 소용, 발생 관리 함께 등에 발생하고 있어 보다는 소용, 발생 관리 함께 등에 발생 수 있 | - 大OIコ | •필로티 및 독립형 동출입구의 각 동별 형태 및 사이즈, 캐노피 및 루버 등 지붕의 형태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저층세대에 시각적 간섭이 |
| 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점점에 단자가 발생 가능합니다. - 아파트의 주등이 위지한 대지의 레벨 및 현태는 본공사시 주원레벨 및 단지내 레벨 개선을 위해 도면과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레벨과 주변 레벨에 따른 토목용벽의 따라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용보물(모형 및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점도로현황에 따라 동낼 도로 소음 및 병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산업지 내외부 단자에 다른 대급형 배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급 상부에 위치한 주동의 축세대의 경우 인접한 대급상부 난간대 사이의 쪽이 음을 수 있으나, 1층 주동물입구와는 동생에 불만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 1층 및 저하부 세대는 당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용받이 참제로 위보다면 있습니다. - 한편, 발코니, 엘레베이터홈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열리베이터 홈 돌네고 하시 보험 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발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발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우롱 열레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열리내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 없습니다. - 101동 남서속에 목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속에 목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송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은 북동속에 근생자랑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자장이 인접하여 자랑 출임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전체 1개층 필요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등과 접하여 근생시설(응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송세대의 소용, 내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다. - 101동 근생하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용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등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101동 전체성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용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등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101동 등록, 북축에 쓰레기본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외을 부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요를 제 없습니다. - 1015 등 등록 병적에 쓰레기본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중세대는 소음, 발생된 수 있습니다. - 1015 등 등학자 쓰레기본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중세대는 소음, 발생된 중에 들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5 등등 병적에 쓰레기본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중세대는 소음, 발생된 중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5 등록 병적에 쓰레기본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중세대는 소음, 발생된 수입 등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5 등등 병적에 쓰레기본리수가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중세대는 소음, 발생 후에 관계 등의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5 등등 병적에 쓰게 기본 보다 기관 보다 기관 | 중절합구 | 일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의 주동이 위치한 대지의 레벨 및 형태는 본공사시 주변레벨 및 단지내 레벨 개선을 위해 도면과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레벨과 주변 레벨에 따른 토목용벽의 마감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모형 및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인접도로현황에 따라 동벨 도로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시업지 내외부 단자에 다른 대급형 베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6 및 저하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동의 설치로 인해 사상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범상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2현관, 발코니, 엘레베이터홀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매발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사상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중교, 전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벨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명레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사상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명레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생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중 사업증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중 사업증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주동 입리 및 장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아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등 남처족에 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족에 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등 전체 1개층 골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정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내 1개층 골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정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내 1개층 필로리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정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발생 최대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등 전하는필로 1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1등 전하는필로리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1등 등 하는목로리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역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1등 등 등록 북축에 쓰레기반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생생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동 필로티 내부 혹은 외부에 자전거보관소 및 휴게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
| 있습니다. - 단지내 배빨과 주변 레벨에 따른 토목용벽의 마감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흥보용(모형 및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접도로현황에 따라 동별 도로 소용 및 빚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사업지 내외부 단자에 다른 데크형 배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사업지 내외부 단자에 다른 데크형 배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동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병하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동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병하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연관, 방크니, 업례베이터를 중이 바닥 단자 및 배발은 시공과정상 다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절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총,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충교, 전상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총,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충교, 전상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충교, 전상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우롱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용마다 상이하며, 최총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용마다 상이하며, 최총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동 종졸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등 본서측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통측에 푹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용,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등 본체 1개종 필로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등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임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춘세대의 소용, 병제 등 한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등 전체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형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제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101등 전하음(필로타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뭿이 조망의 건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등 전하음(필로타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뭿이 조망의 건접을 소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등 전하음(필로타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뭿이 조망의 건접을 소해할 수 있습니다. - 101등 전하음(필로타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뭿이 조망의 건접을 소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등 등 속 목록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용, 본세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
| ●단지내 레빨과 주변 레벨에 따른 토목용벽의 마감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 단지는 안접도로현황에 따라 동별 도로 소용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 단지는 사업지 내외부 단자에 다른 대크형 배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단지는 사업지 내외부 단자에 다른 대크형 배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범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범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현관, 발코니, 엘레베이터홈 등의 바닥 단자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홈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다자인, 증고 정상되는 시공자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치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흥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종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석속에 푹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속에 푹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번세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전축으로 남석측 20m도로에서 진임 가능한 보행자 주출인구가 계획되어 있어 지층세대의 소용,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등록, 북축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집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는 단지는 인접도로현황에 따라 동별 도로 소용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는 단지는 사업지 내외부 단자에 다른 태크형 배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크 상부에 위치한 주동의 축세대의 경우 인접한 대크상부 난간대 사이의 쪽이 좁을 수 있으나, 1층 주동출입구와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쪽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1층 및 저충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법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6한판, 발코니, 엘레베이터홀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한파, 발코니, 엘레베이터 홈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아파트 지하충,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충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엘레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레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명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얼리벤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엄면 및 청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범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남서측에 쪽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쪽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등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정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등 건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성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니다. - 101등 건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성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니다. - 101등 전하를 모르면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벳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니다 때 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등 전하를 모르면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벳이 조망의 간섭을 소래할 수 있으니다. - 101등 점하층(필모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벳이 조망의 간섭을 소래할 수 있으니다. - 101등 점하를 교육하는 보석측 20m도로에서 진임 가능한 보행자 주출임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등 등록,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집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등 등록,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집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
| 본 단지는 사업지 내외부 단차에 다른 대크형 배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데크 상부에 위치한 주동의 축세대의 경우 인접한 데크상부 난간대 사이의 목이 좁을 수 있으나, 1층 주동출입구와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1층 및 저충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안해 사생활이 참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법청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1층 및 저충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안해 사생활이 참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현관 전만에 엘리베이터 홈 설치로 사생활 참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까프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충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축에 푹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축에 푹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충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참해 및 사생활 참해와 눈부심 등의 빚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충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참해 및 사생활 참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건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중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서축으로 남서축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충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참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등축, 북속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충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사이의 폭이 좁을 수 있으나, 1층 주동출입구와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1층 및 저충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법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1현관, 발코니, 엘레베이터홈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홈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에파트 자하충, 1층 로비에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충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이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월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업면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등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5는 남석이 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충세대의 소용,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5는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충세대의 소용,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5는 전체/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제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5는 전체/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제 법령에 따라 별도의 단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5는 전축으로 남석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용,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5는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용,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는 인접도로현황에 따라 동별 도로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범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현관, 발코니, 엘레베이터홀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현관 전단에 엘리베이터 홈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증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엘레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문항으로 인한 소음 및 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장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항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쪽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푹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건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군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정취(필로目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때 때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등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는 사업지 내외부 단차에 다른 데크형 배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데크 상부에 위치한 주동의 측세대의 경우 인접한 데크상부 난간대 |
| •현관, 발코니, 엘리베이터홀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홈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정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결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축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축에 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회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습니다. ·101동 전체 20m도로에서 진임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정축으로 남서축 20m도로에서 진임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장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푹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푹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복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등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며 근생시설(유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군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등 청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등 청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외부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아파트 지하층, 1층 로비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층고, 천장고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충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충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20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충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축, 북축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충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현관, 발코니, 엘레베이터홀 등의 바닥 단차 및 레벨은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제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푹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푹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자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처측증(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동마다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입면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건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성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서축으로 남서축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축, 북축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학자들 수 없는 나는 ** *** *** *** *** *** *** *** *** |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주동 입면 및 창호의 디자인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 바,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성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아파트 주동 •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수 없습니다. •각 주동 동출입구 주변으로 지상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시설과의 연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아파트 | |
| 수 없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01동 남서측에 폭 20m도로가 위치하며, 남동측에 폭 8m 도로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수 없습니다. |
| •101동은 북동측에 근생차량 진출입구 및 근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101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101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101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101동 서측으로 남서측 20m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있습니다.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101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 | |
| | | |
| 있습니다. | | |
| | | |
| ●101동 북측 1개, 동측 근생시설 지상주차장 인근 1개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 | •101동 북숙 1개, 동숙 근생시설 시상수자상 인근 1개의 DA가 설지되어 일부 서승세내에 소음, 신동, 냄새, 배면, 조방, 눈부심 등의 환경권 짐해가 |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남서측에 폭 20m 도로가 서측에는 15m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102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서측 1개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서측에는 15m 도로(단지외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사이에는 단지 동-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어 새마을 시장 이용객들의 회차동선 등 상시 통행이 가능해야는 점에 따라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사이에는 단지 서측 15m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출입구가 입차, 출차 각각 1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접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동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103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4동 동측에는 기존 저층주택단지가 존치해 있으며, 법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있으나, 해당 주동의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4동 동측에 새마을시장 겸용 3M 비상차로(이사짐 등)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주동의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4동 동측에는 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동측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에 인접하여 경비실을 배치해 차량 출입을 관리할수 있는 시야적 거리 확보를 고려했습니다.
- •104동 동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서측에는 폭 15m 도로(단지외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104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동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서측에는 15m 도로(단지외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5동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서측 1개, 남측 1개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옥외), 북측, 동측에 중앙광장 및 수경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107동 서측에는 15m 도로(단지외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과 접하여 5호라인에 근생시설(공용화장실 및 실외기실 포함)이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근생시설의 옥상부는 개별 세대(최하층 세대)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통행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난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106동 최하층(필로티 상부) 세대는 1층 근생시설의 옥상 파라펫이 조망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6동 동측에 키즈스테이션 및 휴게공간, 남측에 중앙광장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및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107동 사이에는 단지 서측 15m 도로에서 진입하는 주출입구가 입차, 출차 각각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접 저층 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는 방문차량 회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어린이버스 승하차 공간과 인접하여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6동 북측에는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근생시설 주차장이 3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근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남측 1개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전체 1개층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7동 북서측 1개, 남동측 2개소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7동 동측,남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7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동측에 휴게공간, 남측에 키즈스테이션 및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서측에는 15m 도로(단지외 도로)와 북측 6m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112동, 115동은 데크 상부(GL+17.0 레벨)에 위치합니다.

- •108동 남서측 데크하부에서 연결되는 경사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 현황 대지 레벨차이에 의한 옹벽이 108동 주변으로 예정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서측 1개, 북측 1개, 동측 1개소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동측,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8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9동 북측 일부에는 6m 도로가 위치하며, 북측으로 공원(단지 내 소유가 아님)이 예정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9동 동측 1개, 남측 데크 하부에 1개소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9동 북측, 동측,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9동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측에 휴게공간 및 옥외 자전거보관소가 데크 하부층(GL+11.5 레벨)에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북측으로 공원(단지 내 소유가 아님)이 예정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북동측 2개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북측,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0동 서측에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111동 동측에는 10m 도로(단지외 도로)가 위치하며, 인접 현황 대지 레벨차이에 의한 옹벽이 예정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111동 사이에는 지하2층부터 데크 상부(GL+17.0)까지 연결되는 외부코어가 계획되어 있어 인근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111동 북측 1개의 DA가 데크 하부(GL+11.5)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1동 동측, 남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1동 북측에 휴게공간, 서측에 키즈스테이션 및 휴게공간, 남측에 주민운동시설(옥외)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2동 데크 하부(GL+11.5)에 어린이집이 1층으로 설치되고, 남측에 유아놀이마당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2동 데크 하부(GL+11.5) 북측에 1개소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112동 동측,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2동 북측에 키즈스테이션 및 휴게공간, 동측에 주민운동시설(옥외), 서측에 중앙광장 및 수경시설, 남측에 유아놀이터(옥외) 및 어린이놀이터(옥외)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2동 동측 10m 도로(단지외 도로)에서 데크 상부(GL+17.0)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0동,111동 사이와 111동, 112동 사이 부대복리시설과 연계된 썬큰이 일부 계획되어 있으며, 111동,112동 사이 썬큰의 경우 옥외 계단으로 데크 상부(GL+17.0)로 수직동선이 연결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2동(최상층 주동) 지붕에 쓰레기이송설비 기계실(집하장) 내 시스템 배기(환기 덕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13동, 114동은 데크 하부(GL+11.5)에 위치하며, 남측에 기존 저층주택단지가 존치해 있으며, 법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있으나, 해당 주동의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3동 북측 1개, 서측 1개, 남측 2개소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113동 동측,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3동 북측에 중앙광장 및 수경시설, 동측에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유아놀이터(옥외), 서측에 어린이놀이터(옥외), 남측에 주민운동시설(옥외)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3동, 114동은 전체 1개층 필로티 계획되어 있습니다.
- •114동 북측 1개, 남측 1개의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114동 동측에는 쓰레기이송설비 기계실을 통한 반출구 리프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련 컨테이너트럭의 출입이 예정되며 이에 인접 세대에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4동 동측,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4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옥외) 및 유아놀이터(옥외), 동측에 텃밭, 서측에 주민운동시설(옥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4동 남측 8m 도로(단지외 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4동, 115동 동측에는 8m 도로(단지외 도로)가 위치하며, 인접 현황 대지 레벨 차이에 의한 옹벽이 예정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5동 남동측 일부에는 데크 하부(GL+11.5)에서 데크 상부(GL+17.0)까지 경사로와 난간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차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5동 북동측에는 10m 도로(단지외 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5동 북측,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포함된)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5동 북측에 주민운동시설(옥외), 서측에 유아놀이터(옥외) 및 어린이놀이터(옥외), 남측에 텃밭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2동, 115동 사이에 지하2층부터 데크 상부(GL+17.0)까지 연결되는 외부코어가 계획되어 있어 인근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 |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
| | •BI 사인물은 101동, 102동, 108동, 114동에 1개소, 111동 2개소, 총 6개소 적용될 예정이며, BI 위치 및 디자인은 분양홍보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
| |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 •옥탑구조물은 102동(일부), 112동, 114동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 •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 최하층 1개소 및 중간층 5개층 마다 1개소씩(동별/ 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만 개폐가 |
| |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됩니다.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시 현장여건 및 |
| |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
|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
| | 있습니다. |
| | •주동 기준층 엘리베이터 공용홀에는 개폐가능한 창호1개소가 설치되며 코어별 창호사이즈 및 채광정도는 상이합니다. |
|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 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수 있습니다. |
| |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
| | 생길 수 있습니다. |
| |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
|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
| |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홀 내에 두 개의 창호가 설치될 경우 그중 1개의 창호는 |
| |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되고 나머지 창호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됩니다. |
| |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2세대 조합은 1개 호기가 설치되며, 3세대 조합은 2개 호기로 |
| 주동 | |
| 엘리베이터 | •101동 1-6호 라인은 2개 호기, 7,8호 라인은 1개 호기, 102동 1~9호라인은 3개 호기, 103동 1~3호 라인은 1개 호기, 109동 1~3호 라인은 1개 호기, |
| | │ 111동 3,4호 라인은 2개 호기로 설치됩니다. │ •110동, 111동 사이에는 지하2층부터 데크 상부(GL+17.0)까지 연결되는 외부코어(엘리베이터 및 계단)가 계획되어 있어 인근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
| |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 | ●111동, 112동 사이에 데크 하부(GL+11.5)에서 데크 상부(GL+17.0)까지 연결되는 외부코어(옥외계단)가 썬큰부와 연계되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차 |
| |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근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 외부 코어 | •112동 북측에 데크 하부(GL+11.5)에서 데크 상부(GL+17.0)까지 연결되는 외부코어(엘리베이터 및 옥외계단)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차 이용시 |
| |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근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 | ●115동 북측(112동 115동 사이)에 지하2층부터 데크 상부(GL+17.0)까지 연결되는 외부코어(엘리베이터 및 옥외계단)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차 이용시 |
| |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근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 무인택배 | •각 동별 지하1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개소 및 이동거리는 상이합니다. |
|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 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하 | •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지하1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
| 주차장 |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
| | |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103동, 104동 사이로 지하주차장 부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107동 사이로 지하주차장 주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07동 인근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주차장 관련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 및 완료 되어 주차계획이 구법과 신법이 혼용 적용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신법) 폭 2.5m, 확장주차(신법)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구법) 폭 2.4m, 확장주차(구법) 폭 2.5m로 혼용되어 계획되어 있으며,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함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여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세대창고의 위치, 스펙, 개수, 동별 배치 현황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39타입 세대수 제외, 세대당 1개소 가능한 공간이 예정되어 있으나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휀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된 실외기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으며, 장비배치 등 용량 검토에 따라 실공사시 실외기실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의 경우, 인접 세대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측 20M 도로변 지상 1개층 2개소(101동, 102동 인접)와 서측 15M 도로변 지상 1개층 3개소(103동, 104동, 106동 인접), 동측 새마을 시장변 지상 1개층 1개소(103동 인접)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동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일조권, 소음, 냄새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 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남측 20M 도로변 상가 북측 지상 1층(옥외) 및 서측 15M 도로변 단지 주출입구 인근 지상 1층(옥외) 총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별 상가 내부에 설비 점검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가분양 이후 설비점검 등의 사유로 일부 상가 호실을 통하여 점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가 109동 , 110동 사이 데크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연결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슬리안센터_스포츠 시설(L-라운지, 피트니스클럽, GX, 멀티룸,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사우나(남,여) 등)은 111동, 112동 115동 인접한 하부 데크층에 설치되며, 내부 복도 및 로비를 통해 지상과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 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슬리안센터_스포츠 시설 중 L-다이닝카페, 코인세탁실, 다목적실은 출입구가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가 109동 데크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니어클럽)경로당이 115동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 112동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슬리안센터_에듀 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 1인독서실 등)은 110동, 111동 사이 데크층에 설치되며, 내부 복도 및 로비를 통해 지상층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슬리안센터 에듀 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는 출입구가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맘&키즈카페가 111동 데크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합니다.
-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설 │•동별로 상이하지만 각동 지하에는 제연휀룸, 동전기실, 세대창고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101동과 인접하여 근생 저수조, 펌프실 설치되며, 근생저수조 일부만 동지하에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층에 전기실, 기계실(근생시설)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07동과 인접한 지하층에 저수조, 펌프실, 소화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08동과 인접한 지하층에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09동과 인접한 지하층에 전기/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12동과 115동 사이 지하층에 재활용저장창고가 설치되어 인접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14동과 115동 사이 지하층에 쓰레기이송설비 기계실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 |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주문주 각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보행자출입구에 부문주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수량 및 형태, 위치는 본공사시 |
| | |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문주 | •주문주 및 부문주의 설치로 인한 보행동선, 도로 선형 및 지상 시설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및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외에 보행자 출입구 등 일부 단지 가각부에 단지 시인성 및 입구성을 위하여 가벽형의 부문주가 계획될 수도 있으며, 이는 |
| | 경비실 | 본공사시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는 경비실이 각각 1개소씩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 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
| | | 경비실의 위치는 계획에 따라 출입구 및 주차 차단기와의 거리가 각각 상이하며, 이는 본공사시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 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 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
| | |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 벽 마감, 거실/복도/주방 벽 시트 판넬 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
| | |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
| | |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마감 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 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
| | | (전, 전복시구 전형 시 구역의 설계로서 역형 기준에 따다 마음 구께에는 역세 마음등의 구께 등 마세인 시구(설계본에, 전형 설형, 역사 등)을 모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 아트월 타일, 타일 부착 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 치수는 |
| | | 해당 자재 및 부착 두께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 |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
| <u>단위세대</u> | 공통사항 | 선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텐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
| | |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상부층이 기본형, 하부층이 확장형 일 경우, 상부층 발코니 바닥에 시공되어야 할 단열재로 인하여 상부층의 인테리어 및 반자 높이가 달라질 수 |
| | | 있으며, 동 조합, 실위치에 따라 벽체에도 단열째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 | | •하부층이 기본형, 상부층이 확장형 일 경우, 하부층 발코니 상부에 시공되어야 할 단열재로 인하여 하부층의 인테리어 및 반자 높이가 달라질 수 |
| | | 있으며, 동 조합, 실위치에 따라 벽체에도 단열째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 |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
| | |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 |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는 본공사 시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 |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 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1 | <u>,</u> |

|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 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
|-------|---------------------------------------------------------------------------------------|
| | |
| |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 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
| |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본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 |
| | 될 수 있습니다. |
|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 | •세대 내 세부 마감 디테일은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
| | 있습니다. |
|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
| |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주 시 세대 내 추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 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 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
| |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필로티 상부 세대 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가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
| | •쓰레기이송설비 기계실 배기구가 112동 최상층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최상층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배기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
| |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배기구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각 단위세대는 안방앞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에 피난용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필로티 상부 단위세대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는 |
| 하향식 | 발코니에 설치되며, 고정지지대는 발코니 창문 외부에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피난사다리 |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
| |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각 세대별 기본 제공 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 제공 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
| | 분양 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인허가 도서를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본 제공 거실 아트월은 대형 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유상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적용 구간이 상이합니다. 또한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
| 제공품목 |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
| |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현관 중문 등의 유상 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 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 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 시 일부 |
| |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구공사 | •주택형별로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미적용 될 수 있으니 카달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
| | |

제공 사양과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로 제공되는 팬트리와 드레스룸의 유무,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미적용 될 수 있으니 카달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이형 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 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냉장고장의 경우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가구가 미적용 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워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주방 싱크대 하부장은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세대별 온수분배기의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 시 동등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단, 주방 분합창이 미닫이 형태일 경우 주방 상판과 창호의 경계에 뭌턱 적용됩니다)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욕실 내 철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위치는 인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은 마감재가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침실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 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합니다.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 기준 H:1.200 이상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 및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유리난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됩니다.(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전기/설비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39, 49타입은 욕실/주방 공동배기 방식 적용) 현장여건에 따라 배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하부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공배관이 매립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 삽입 및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의 디퓨져의 사양, 위치, 수량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마감재(위생도기 및 수전류, 옵션상품)의 경우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홈네트워크, 배선기구, 네트워크 스위치의 위치 및 사양,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무선충전기의 제품사양 및 디자인 등은 인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발코니 미
- •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 안방 앞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측·외벽에 결로방지용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 수전, 콘센트 위치 등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A10171A1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
| |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 •안방 또는 침실 전면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 빨래 건조대와 스위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장, |
| | 가구, 마감 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
| |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 불가하며, 상세 사항은 추후 상품 구성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상품 구성 및 위치, 형태, 제공 방식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옵션 |
| |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 | •냉장고/김치 냉장고 옵션의 경우 삼성과 LG 중 원하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 따라 제품의 형태가 상이하니 계약 전 확인 |
| | 바랍니다. |
| | •현관 중문 옵션 설치 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하자 |
| | 보수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견본주택은 마감 고급화 및 상품 강조를 위하여 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 옵션(이태리산 대형 세라믹 타일) 안으로 시공되었으며, 옵션 미선택 시 |
| 유상옵션 | 기본형 아트월 타일(아시아산)이 설치됩니다. 또한,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자재 양중, 시공의 용이성, 하자 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대형 세라믹 타일은 현장 여건에 맞도록 커팅 시공됩니다. |
| | •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아트월(기본) 제외 부위는 벽지 마감입니다. |
| | •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 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시트 판넬은 본공사 시 줄눈 및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정을 위한 타카 자국이 보일 수 |
| | 있습니다. |
| |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이 제공되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최고급) 주방 벽/상판과 캐슬 미드웨이 선반이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 국산 타일(300*600) 주방 벽, |
| | 엔지니어드스톤(기본) 주방상판과 행잉 2종 ACC가 설치됩니다. |
| |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주방 벽 마감재 종류에 따라 상판 뒷턱 등의 시공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안방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슬라이딩 대형 붙박이장이 설치됩니다. (49타입은 여닫이 붙박이장이 설치됩니다.) |
| | •3구 인덕션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 | •비스포크/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 시 냉장고, 김치냉장고와 함께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수납 특화 키큰장이 함께 제공되며, 항목별 별도 선택은 |
| | 불가합니다. |
| | |

•비스포크/오브제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제공됩니다.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① 본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②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됩니다.

■ 홍보물

- 분양 판촉을 위한 홍보 제작물, 견본주택 내에 사용된 관련 CG.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 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L-다이닝, 다목적실, 샤워실, 탈의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맘&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 등

■ 기타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안내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10/main/index.do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859-8

■ **사업지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5-3 일원

■ 분양 문의

대표번호 : 1551-345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
| 상호 | 광명 제9알(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롯데건설(주) |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41, 701-1호 (광명동, 동진프라자)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
| 법인번호 | 134971-0002579 | 110111-0014764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분 | 건축 | 소방 | 전기 |
|----------|----------------|----------------|----------------|
| 회사명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하일기술단 |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감리금액 | 6,061,015,400원 | 1,199,000,000원 | 1,062,556,000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서 기간 | |
|----------------------|------------------|-------------------------------------------|--|
| 01292024-101-0002300 | 269,852,1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 |
| | |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_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 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 분양자(매도인)는 본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서 제8조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날짜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7년 10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시행 및 시공자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입주 시 세대물청소 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 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당일이전까지, 입주지정기한 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일 당일까지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키불출 세대는 키불출일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불출세대 부담으로 함)